#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(윤영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239

발의연월일: 2020. 8. 25.

발 의 자:윤영덕·박찬대·송갑석

홍기원 · 강득구 · 권인숙

김주영 • 이용우 • 김경만

이용빈 · 윤준병 · 이탄희

김남국 · 김수흥 의원

(14인)

### 제안이유

국내·외 대학 간 공동학위과정 활성화 등 고등교육분야의 교육교류확대로 외국인 유학생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음. 국내 고등교육기관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 글로벌 고등교육시장을 적극 선도하기 위해서는 유학생의 양적 확대와 함께 유학생질 관리 및 한국 적응 지원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하는 시점임.

이를 위해 국내 고등교육기관에서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을 선발할 때 입학 전형 자료로 영어, 한국어 등 어학 능력을 요구하고 있으며, 교육부장관은 어학 능력 중 한국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한국어능력 시험을 시행하고 있으나, 명확한 법적 근거는 부재한 상황임.

따라서 현재 추진 중인 교육부 소관 업무인 한국어능력시험의 시행 •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등교육기관이 외국인 및 재외국민을 선발할 때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.

아울러 한국어능력시험이 대학 입학 전형 자료로 활용되므로 시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필요가 있어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의 근거를 법에 마련하고자 함.

## 주요내용

입학전형 자료로 어학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, 어학 능력 중 한국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한국어능력시험을 시행할 수 있 도록 함(안 제34조의7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4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4조의7(외국인 학생의 선발 등) ① 대학의 장은 재외국민, 외국인 대상의 입학 전형 자료로 어학 능력을 활용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어학 능력 중 한국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은 한국어능력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.
- ③ 제2항에 따른 한국어능력시험의 시기, 방법,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현 행 <u>&lt;신 설&gt;</u>	개 정 안  제34조의7(외국인 학생의 선발 등) ① 대학의 장은 재외국민, 외국인 대상의 입학 전형 자료로 어학 능력을 활용할 수 있다. ② 제1항에 따른 어학 능력 중 한국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은 한국어능력시험 을 시행할 수 있다. ③ 제2항에 따른 한국어능력시 험의 시기, 방법,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
	대통령령으로 정한다.